

3. 달라지는 재정환경 및 주요업무

□ 제도개선

구 분	2008년도	2009년도
행안부 훈령 통합	◦ 예산편성기준, 예산과목구분, 사업예산운영규정 등 3개훈령 개별 운영	◦ 예산편성운영기준 1개훈령 통합 운영
성과계획서 시범 작성제출	-	◦ BSC 및 예산서의 정책사업과 연계된 성과계획서 시범작성 ⇒ 도 의회 제출 ◦ 전국 최초 시행
자체경비 지원개선		
총액관리 경비	◦ 부서운영 기본경비, 국내외 여비, 사업성 일반운영비를 실국별 총액으로 배분	◦ 부서운영 기본경비, 국내·외 여비만 총액으로 배분 ◦ 사업성 일반운영비는 tap다운 사업으로 조정
tap다운 예산	◦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실국별 배분	◦ 자체사업 예산 + 사업성 일반운영비를 실국별 배분 ⇒ 종전 총액경비로 배분되던 사업성 일반운영비가 tap다운 한도액에 포함되면서 사업예산으로 요구되어 소액의 사업수 증가함.
민간이전 경비 개선	-	◦ 최근 3년 자체수입 증가율에 따라 한도액을 설정하여 실국별 배분 - 대상 : 순 도비지원 민간경상보조(307-02), 민간행사보조(04) ◦ 3년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후 계속 지원여부 결정(일몰제 도입)
지방 교부세제도 개선(법률개정중)	◦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- 지역현안 50%, 재해대책 50% ◦ 도로사업 보전분('05~'08까지) - 매년 8,500억원	◦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조정 - 지역현안 30%, 시책수요 20%, 재해대책 50% (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가능) ◦ 도로사업 보전분 기간연장('11까지) - 매년 8,500억원
재정관리제도 운영 강화	◦ 중기재정계획, 투융자심사, 출자출연심의, 공유재산관리계획, 정수물품취득, 친환경성검토	◦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사 신설(5천만원 이상) ◦ 총사업비관리제도 본격시행(20억원 이상 건설사업)
세출 예산과목 일부 조정	◦ 국외여비(202-03) ◦ 시설비및부대비(401) - 기본조사설계비(01), 실시설계비(02) 토지매입비(03), 사설비(04), 감리비(03) 시설부대비(06), 행사시설비(07)	◦ 국외여비 과목 분리(1개목 → 2개목) - 국외여비(202-03), 국제화여비(04) ◦ 시설비및부대비 통합(7개목 → 4개목) - 시설비(01), 감리비(02) 시설부대비(03), 행사시설비(04)

□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

○ 조기집행 기본방향

'09년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 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자 함.

- 현재 경기침체 위기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재정 조기집행 추진
- 기존현행 「관행과 틀」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집행
-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, 재정운용방식 개선, 우수시책 발굴 등
-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 추진목표(60%)보다 높은 65% 자금집행 추진

○ 세부 추진계획

-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⇒ “조기집행을 위한 세출예산집행 요령” 확행
- '09년도 이월예산(명시/사고/계속)조기확정으로 집행 극대화
-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월중 확정 ⇒ 조기집행 규모 확대
- 도·시군 및 지방공기업 재정 조기집행 실적 점검 정례화
- 기관별(도본청, 사업소, 시·군)실적점검 전담직원 배치운영
-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조기집행사업으로 확대 시행

'09년 상반기 90% 이상 발주 ⇒ 65% 이상 자금집행

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예산현액(A)	자금집행 목표액(B)	자금 집행액 (C)	자금 집행율(%)	
				현액대비(C/A)	목표대비(C/B)
계	103,869	67,514	20,040	19.3	29.7
도 본청	33,432	21,731	7,293	21.8	33.6
시 · 군	68,891	44,778	12,384	18.0	27.7
공사/공단	1,546	1,005	249	16.1	24.8

※ 2009. 2. 28일현재